



어바인시 대중 공고문

민권법 제6장

연방 재정 지원에 대한 차별 금지

1964년 민권법 제6장은 미국 내 어떠한 사람도 인종, 피부색 또는 국적을 이유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어떠한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데 배제되거나, 혜택을 거부당하거나, 기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. 어바인시는 모든 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해 1964년 민권법 제6장과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제6장 외에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기타 차별 금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1973년 연방 지원 고속도로 법안(23 USC 324) 제162절 (a)(성별); 1975년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(연령); 1973년 재활법/1990년 미국 장애인법 제504절 (장애). 이러한 요건을 종합하면 대단히 중요한 제6장 프로그램이 정의됩니다.

어바인시는 인종, 피부색, 국적에 따른 부적절한 활동 및 차별에 대한 모든 혐의를 조사할 것입니다. 불만 제기 및 문의가 있거나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949-724-6067로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. 차별에 관한 불만 제기 양식 및 불만 제기 지침은 아래에 참조된 당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이메일 또는 우편을 다음 주소로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.

City of Irvine

Attn: Title VI Coordinator and ADA Compliance Officers

PO Box 19575, Irvine, CA 92623

ADACompliance@cityofirvine.org

차별 금지 공고문

어바인시는 프로그램, 서비스 또는 활동에 가입, 이용 또는 운영에 있어 인종, 피부색, 국적, 성별, 장애, 성적 지향, 종교 또는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. 이 공고문은 1964년 민권법 제6장 및 캘리포니아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공됩니다. 1964년 민권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차별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, 우려 사항 또는 불만 사항이나 추가 정보 요청은 시의 지정된 제6장 코디네이터/ADA 준수 관계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